

부대입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시행토록 개선

조달청은 오는 95년도부터 부대입찰공사는 모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토록 하며, 부대입찰공사 가운데 예가의 85%이하로 낙찰된 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가격을 심사해 하도급대금 적정지급을 보장해주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실시공방지대책을 마련했다.

조달청이 부대입찰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을 전면 직불하기로 한 방침은 그동안 공사대금을 둘러싼 고질적 비리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 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.

부대입찰제도는 원도급업체들이 입찰을 볼 때 견적서에 하도급할 공종, 하도급가격 등을 미리 결정지어 투찰하게 하는 제도이다. 부대입찰제는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따고나서 하도급공종·업자·가격 등을 결정하고 있는 일반 공사와 비교할 때 정반대의 절차를 거치는 셈이다.

이 부대입찰제는 도입 배경은 무엇보다도 부당한 저가하도급과 이중계약 등 하도급부조리를 근절하고 정상적인 원하도급거래관계를 형성시켜 하도급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자는 데 있다.

그러나 현재 원도급업체들은 현행 규정상 부대입찰제에 용한 하도급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이용 부대입찰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이다.

또한 하도급업체들이 부대입찰공사를 하면서도 이중계약 등을 통해 견적서에 의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여유 등을 지급받아 사

실상 공사대금을 삐감 당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었다.

이런 현실점에서 이번 조달청의 부대입찰 하도급대금 직불방안을 만연된 부대 입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.

현재 사실상 저가하도급심의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조달청이 부대입찰 하도급대금 직불과 함께 추진중인 85%미만 저가투찰 부대입찰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도 하도급대금 적정지급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조달청이 마련한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따르면 기술경쟁위주의 입찰·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PQ제 대상공사도 확대하고 PQ에 통과된 응찰업체 가운데 응찰액이 낮은 3~5개사를 선정, 이중 공사실적과 기술능력, 경영상태 등이 좋은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최적낙찰제(종합낙찰제)를 실시하기로 하고, 현행 14개 PQ대상공종 가운데 지하철, 교량, 터널, 가스 등 공공성이 강한 4가지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최적격낙찰제의 최종심사과정에선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하도급계열화 실태와 재해율, 제재경력 등은 물론 업체 능력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낙찰대상업체의 공사여유율도 따질 방침이다.

조달청은 선진국처럼 신용평가에 의한 은행보증제도(Bond)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인을 선정해 하는 인적보증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으며, 중소지방업체에 대한 우대제도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해당지역에 대해 10%내외의 입찰가격을 우대 평가해 줄 방침이다.